

수원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2가단5083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호섭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20.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6. 2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. 6. 30. 접수 제802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수료환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3. 5. 30. C은 원고에게 14,727,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한편 C은 2021. 6. 29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, 2021. 6. 30.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으나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C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3.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,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 시가 124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E에 대하여 6,960,000원의, F에 대하여 2,986,000원의, 부산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과 관련하여 14,727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,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/5 정도 액수에 불과한 점,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. 8. 3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,

G 주식회사가 2022. 1. 19. 청구금액 33,080,64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나,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인 점,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H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2021. 12. 24. 취하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운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 : 48.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279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: 279분의 21.28

